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09

발의연월일: 2024. 7. 26.

발 의 자:조배숙·박준태·엄태영

유상범 • 박덕흠 • 김은혜

윤재옥 • 백종헌 • 정점식

곽규택 · 이종배 · 강선영

고동진 · 강대식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과 강원의 경우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는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중추도시로 인접한 시군 간 광역교통 수요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광역적 교 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없다는 이유로 현행 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 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거점도시 등의 대도시권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이 조에서 "거점도시"라 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제2조제1호에 따라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대도시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가목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거점도시"로 보고, 같은 호 나목 및 제2조제3호 중 "시·도"는 "시·도 및 거점도시"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거점도시 등의 대도시
	권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제
	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
	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이 조에서 "거점도시"라 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에 있는 지역(제2조제1호에 따
	라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지역
	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대도시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가목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u>시 및 도"는 "특별시·광역시</u>
	<u>•특별자치시·도 및 거점도</u>
	시"로 보고, 같은 호 나목 및
	<u>제2조제3호 중 "시·도"는 "시</u>
	•도 및 거점도시"로 본다.